

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2005. 9. 8(목)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9월 1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년 9월 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1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5. 9. 7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(위원장이 시장)의 상위심의기구임에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
- 위원회와의 상호 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대표협의체위원장 : 시장 (안 제3조)
-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은 삭제함.(안 제3조)